우버人사이트

매경미디어그룹 바로가기 >



Home

캠퍼스에서

KOTRA・韓商의 눈

Tech&

Life&Culture

Society&Business



Fall for ST. KITTS



이명원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이명원 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한국에 거주하는 미 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나?



이명원 | MW LEE, CPA P.C. 대표

입력: 2018.01.19 10:16:23 수정: 2018.01.23 09:4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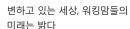








추천 기사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자신만의 이미지, '얼굴이 참 좋 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시작, 학습 자세 바로 잡으면 집중력이 쑥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드러내 려면 활동의 다양성보다는 내 용이 중요하다



내 자신을 돌아볼 공간, 누구에 게나 공터가 필요하다

(Q) 미국세금계산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번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을 외국에 낼 때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등과 같은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 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에 세금 을 낼 때는 한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라 한다.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 10년간 이월공제 (carry over)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 이에 대한 세금 \$300한국에 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을 계산해보니 세금이 \$350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 낼 세금은 \$50 (미국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뺀 차액)이다.

반대로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었다면, 미국에 낼 세금은 0이 다(미국의 세금 \$250에서 한국의 세금 \$250을 차감한 금액). 이경우 한국에서 \$300을

6/24/2018 우버人사이트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50)이 발생하면, 이를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봐 직전 사업연 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1년 소급공제), 그러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 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0년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낸 세금이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즉,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 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이를 항목별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만 적용해야하며, 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 동산이 영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영업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tax credit)는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직접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었으나, 항목별공제(deduction)는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항목별공제액 X 세율'만큼의 혜택만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낸 \$300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는 낼 세금에서 \$300을 차감해주는 것이므로 \$300의 직접적인세금 혜택이 있으나, 반대로 항목별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에서 \$300을 차감해 주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300줄어 세금은 \$90(세율을 30%라 가정하면, \$300 X 30%= \$90)줄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외국의 EARNED INCOME에 대해 최대 \$101,2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한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 손흥민 골에 오소리오 감독 "훌륭해...현재와. 클라라 파격적 中 화보...아찔함 업그레이드 JP 별세에 다시 관심...전두환·노태우 근황은 오승아 란제리 화보...레인보우 몸매 퀸 "양도세 엎친 데 종부세 덮쳐"...더 얼어붙는 ..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中개입·더딘 北비핵.. 신세계百 '워라벨'...개점 11시로 늦춘다 캄보디아서 중국인 상대 '아기공장' 적발...대.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언덕(?) 6/24/2018 우버人사이트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 외국의 소득이 미국의 세금계산시 합산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미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EARNED INCOME이 \$101,200을 초과하여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 받지 못한 소득이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납세자 별로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가지 덧 붙히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납세자가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를 적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던 납세자가 이를 취소하게 되면 그 납세자는 향후 5년이내에는 IRS의 승인 없이는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또한 기존에 이 규정을 적용받던 납세자가 이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때는 IRS의 승인이 없으면 향후 5년내에는 다시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주정부 세금(state tax)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정부 세금(state tax)을 계산할 때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은 공제해 주지 않는 주(state) 가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에 거주하지만 이러한 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 정부세금은 납부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MW LEE, CPA P.C. 대표 회계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원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더보기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해외근로소득공제: \$102,100까지는 세금 안 낸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6/24/2018 우버人사이트

	도움말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매일경제

매일경제 회사소개 | 회사연혁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인재채용

매경닷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의견 | 서비스문의

매경 Family Site 대경 Family site ▼

이메일 추출금지 | 윈도우XP SP2설정 | 뉴스이용규칙 RSS

Copyright (c) 2013 매경닷컴. All rights reserved.